

사단법인 일일시호일

대의원 총회 회의록

개 최 일 시	2023년 5월 24일 16시 00분	소집통보일	2023년 5월 15일
회 의 장 소	서울시 종로구 우정국로 45-11 동산불교대학 2층		
참 석 자	대의원 총 27명 중 24명 참석		
의 제	1. 2022년 결산보고의 건 2. 2023년 예산편성의 건 3. 정관개정의 건		

회 의 내 용

의장인 대표권 있는 이사 김형규는 정관 규정에 따라 의장석에 등단하여 법정 정족수에 달하는 대의원이 출석하였으므로 본 총회가 적법하게 성립되었음을 알리고 개회를 선언하고 다음의 의안을 부의하고 심의를 구하다.

안건 1. 사단법인 일일시호일 2022년 결산보고의 건

- 의장은 사단법인 일일시호일 2022년 결산보고의 건을 상정하다.
- 실무자는 전기 이월금 112,041,381원을 포함하여 2022년 총 후원금 수입은 282,303,541원이며, 이주노동자 치료비 지원 및 이중언어말하기대회 행사비 등의 사업비와 법인 운영비로 총 지출은 267,579,968원 임을 설명하다.
- 후원금의 대부분을 이주노동자 병원비 지원사업, 다문화가정 생활비 지원사업, 행사비 등의 사업비로 사용함을 확인하고 특이사항이 없음을 확인하고 원안대로 승인하다.
- 이로써 일일시호일 2022년 결산보고의 건을 마무리하다.

안건 2. 사단법인 일일시호일 2023년 예산 보고의 건

- 의장은 사단법인 일일시호일 2023년 예산 보고의 건을 상정하다.
- 실무자가 사업계획서를 작성하고 그에 준하여 작성한 예산서를 설명하다.

(단위 : 원)

수 입		지 출	
구 분	금 액	구 분	금 액
①회비	55,000,000	①인건비	80,075,280
②이월금	126,764,954 (기본자산 25,123,587원 포함)	②임대료	12,000,000

③기부금	150,000,000	③운영비		43,689,674
④후원금	20,000,000	④목적 사업	이주노동자 병원비 지원금	96,000,000
			다문화가정 자녀 장학금	50,000,000
			홍보비	10,000,000
			가족센터 위탁운영	30,000,000
			전국이중언어 말하기대회	30,000,000
합계	351,764,954	합계	351,764,954	

- CMS로 안정적인 회비 수입과 홍보를 통한 후원자 확대계획을 세우고 이월금 126,764,954원을 포함하여 총 351,764,954원의 수입을 예상하며, 운영비와 목적사업 5가지를 포함하여 총 351,764,954원의 지출을 예상하여 예산계획을 세움을 설명하다.
- 2023년 예산 검토결과 특이사항 없음에 따라 원안대로 승인하다.

안건 3. 사단법인 일일시호일 정관 개정의 건

현 행	개 정 안
<p>제 4조(사업) 본 법인은 제3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의 사업을 행한다.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1. 이주노동자 병원비 및 생활비 등 각종 지원사업 2. 다문화가정 자녀장학금 및 생필품 등 각종 지원사업 3. 다문화 인식개선을 위한 홍보사업 4. 다문화 및 이주노동자 복지·지원 등 관련 시설 운영 사업 5. 기타 본 법인의 목적달성에 필요한 사업 	<p>제 4조(사업) 본 법인은 제3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의 사업을 행한다.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1. 이주노동자 병원비 및 생활비 등 각종 지원사업 2. 다문화가정 자녀장학금 및 생필품 등 각종 지원사업 3. 다문화 인식개선을 위한 홍보사업 4. 다문화 및 이주노동자 복지·지원 등 관련 시설 운영 사업 5. <u>사회복지시설 운영 및 단체 지원 사업</u> 6. 기타 본 법인의 목적달성에 필요한 사업
<p>제 6조(이익의 제공)</p> <p>① 본회는 제4조에 규정한 목적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수혜자에게 제공하는 이익은 이를 무상으로하며, 부득이한 경우 수혜자</p>	<p>제 6조(이익의 제공)</p> <p>① 본회는 제4조에 규정한 목적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수혜자에게 제공하는 이익은 이를 무상으로하며, 부득이한 경우 수혜자에게</p>

에게 그 대가의 일부를 부담시킬 수 있다.

② 본회의 목적사업으로 제공하는 이익은 특별히 그 목적을 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수혜자의 출생지, 출신학교, 직업, 성별, 기타 사회적 지위 등에 의하여 부당하게 차별되어서는 아니된다.

그 대가의 일부를 부담시킬 수 있다.

② 본회의 목적사업으로 제공하는 이익은 특별히 그 목적을 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수혜자의 출생지, 출신학교, 직업, 성별, 기타 사회적 지위 등에 의하여 부당하게 차별되어서는 아니된다.

③ 수입을 회원의 이익이 아닌 공익을 위하여 사용하고 사업의 직접 수혜자가 불특정 다수가 되도록 한다.

- 폭넓은 사업을 위해 제 4조에 사업을 추가하고, 지정기부금단체 재지정을 위하여 공익 목적의 조항을 추가하는 것으로 특이사항이 없으므로 대의원 만장일치로 승인하다.

- 의장은 이상으로써 정기총회 목적인 의안 전부의 심의를 종료하였으므로 폐회한다고 선언하다. (회의 종료 시간 16시 40분)

2023년 5월 24일 사단법인 일일시호일



의장 대표권있는 이 사 김 형 규



이 사 심 정 섭



이 사 이 재 형



이 사 권 오 영



※ 2023년 총회

